

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“학생근로활동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“학생아르바이트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,
-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현행 :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 - 개정 :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
- 방학동안 도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“학생 근로활동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“학생아르바이트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 제고

- 대상자의 범위를 “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의 자녀”에서 “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”으로 변경하여 대상자 범위 확대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학생근로활동 대상인 학생을 “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”에서 “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”으로 변경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
- 제명을 “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- 다만, 현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조례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아주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한글 대체용어가 있을 경우 조례에 외래어를 쓰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붙임 :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